

2021년 1월 29일

각위

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

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중심 판결에 대하여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특허권 침해 소송~

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본사: 도쿄토 치요다쿠, 사장: 코보리 히데키, 이하 「당사」)는 중국 선전시의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 판매 회사인 선전시 쉬란(旭冉)전자 유한공사 및 선전시 쉬란(旭然)전자 유한공사(이하, ※쉬란전자 등)를 공동 피고로 하여, 2018년 8월에 당사가 보유한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중국 특허권(특허 제 ZL200680046997.8 호)에 근거하여, 쉬란전자 등이 판매하는 『단층 W-scope』 전지용 세퍼레이터 제품에 대한 중국에서의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합계 인민위안 100만위안)을 요구하며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상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당사 주장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만, 쉬란전자 등은 이에 불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이번에 2020년 12월 2일자로 상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당사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상기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중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적 재산을 중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본사: 도쿄토 시나가와쿠)의 중국에서의 판매 대리점

#### 【과거의 관련 프레스릴리스·알림】

「선전시 쉬란전자 유한공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2018년 8월 20

일)

<https://www.asahi-kasei.com/news/2018/e180820.html>

「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판결에 관하여」(2020년 5월 11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0x69-att/e1200511\\_1.pdf](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0x69-att/e1200511_1.pdf)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2020년 2월 4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19/pdf/e1200204\\_1.pdf](https://www.asahi-kasei.com/jp/news/2019/pdf/e1200204_1.pdf)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관한 당사 한국 특허의 유지 심결에 대하여」(2020년 12월 23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1yem-att/e1201223\\_1.pdf](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1yem-att/e1201223_1.pdf)

이상